삼정 KPMG

손에 잡히는 회계감독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자회사 감독

2026.05.21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udit Committee Institute)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은 그룹전체(종속기업 포함)로 확장

감사위원회의 자회사 감독이 필요한 이유

1. 법적 책임의 확장

- 지배회사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책임 범위가 종속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의무 또한 연결 실체 전체로 확대

2. 연결재무제표 신뢰성 확보

-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므로, 자회사의 통제 미비점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의 '중요한 취약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함

3. 그룹차원의 위험 관리

- 자산 규모가 작더라도 부정 위험이 높거나 복잡한 회계처리가 발생하는 자회사가 평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범위 선정(Scoping)의 적정성을 감독

4. 자원 및 조직의 적정성 점검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별도 기준보다 통제의 개수가 많고 그룹차원의 자원이 투입되므로, 이를 지원할 조직과 인력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삼정 KPMG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1.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검토(1/2)

양적 기준 뿐만 아니라 질적 기준(부정위험, 회계추정 및 판단이 개입되는 영역 등)을 고려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 자회사의 평가 대상범위는 세가지 유형으로, ① 재무제표 전체수준의 통제활동, ② 특정 프로세스(계정과목 등) 관련 통제활동, ③ 그룹차원에서 자회사를 관리하는 모니터링 통제활동으로 구분됨

구분	내용	양적 기준 예시	질적 기준 예시
유의적 부문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	매출 등 주요 지표의 15% 초과	• 부정위험이 높은 부문 • 신규 취득한 부문 등
	특정 위험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부문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특정 위험을 포함하는 부문	중요성 금액의 4배	• 그룹 통제의 운영 효과성이 낮은 부문 • 내부감사기능업무가 수행되지 않는 부문 등
	합쳤을 때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	중요성 금액의 8배	• 부문의 중요 왜곡표시위험 수준 • 기타 잔여부문이 다른 부문과 합쳤을 때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 등
	개별적으로 또는 합쳤을 때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부문	상기 외	• 상기 외

삼정 KPMG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1.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검토(2/2)

- 통상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와 통합 감사이므로 외부감사인이 설정한 연결재무제표 감사범위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범위는 동일하게 선정됨
- 경영진이 설정한 중요성 금액이 외부감사인이 설정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 금액보다 같거나 또는 작은 지 확인 필요(경영진의 중요성 금액이 더 클 경우 감사인의 감사범위보다 작아질 수 있음)
- 경영진이 설정한 대상범위가 외부감사인이 설정한 대상범위보다 작아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자체로 경영진의 대상범위 선정절차에 미비점으로 인식될 수 있고 누락된 범위 차이로 인해서 미비점을 식별하지 못할 수도 있음
- 감사위원회는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평가하고 회사가 선정하지 않은 부문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감사위원회 체크포인트

☑	경영진이 산정한 연결재무제표 평가 범위가 양적 기준 뿐만 아니라 자회사 부정위험, 복잡한 회계처리 및 회계추정 등 질적 기준까지 합리적으로 고려되어 선정되었는지 점검
☑	회사가 선정한 연결 평가 범위와 외부감사인이 설정한 감사 범위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

삼정 KPMG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2. 자회사에 대한 평가조직 검토

자회사가 운영하는 통제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이 적절히 갖추어져 있는 지 감독해야 합니다.

- 자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조직은 회사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적용 가능
- 자회사가 전담조직을 자체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고, 지배회사의 전담조직이 자회사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
- 해외 자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상 설문응답 중 주요한 장애요인이 '현지 인력 및 역량 부족(22.7%),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18.7%)' 으로 응답(주1)
- 자회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이나 거점별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는데 이를 공유서비스센터 (Shared Service Center, SSC)라고 함

공유서비스센터(Shared Service Center, SSC)

- 그룹 내 부문별로 분산된 지원부문의 기능(내부회계관리제도, 자금, 재무, 인사, IT 등)을 특정 부문에 집중하여 처리하는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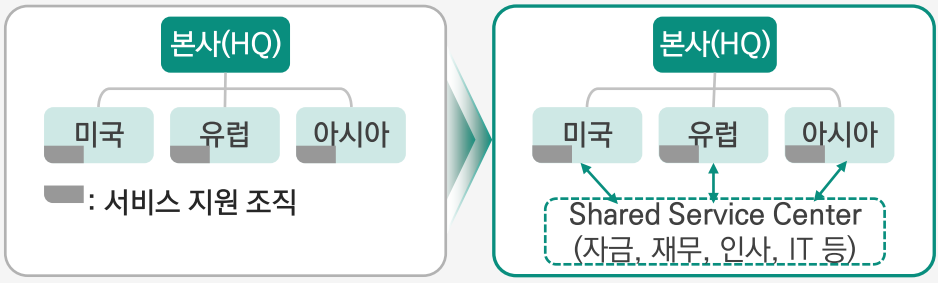

(주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 설문결과 분석. 2024.06

삼정 KPMG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3. 자회사의 통제활동 감독

위험 수준에 따라 자회사별 통제활동 평가와
핵심 IT 시스템 검증이 누락 없이 이루어지는 지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 자회사의 통제활동 평가는 자회사 재무제표 전체 수준 또는 개별 자회사의 특정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할 수 있음
- 개별 자회사 재무제표 전체 수준 또는 개별 자회사의 특정 프로세스가 아닌 잔여부문에 해당하는 자회사는 지배회사가 그룹차원에서 모니터링 통제활동으로 관리할 수 있음
-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존 별도 기준에 속한 IT 시스템과 연결결산을 위한 시스템 뿐만 아니라 연결 범위에 선정된 자회사의 재무보고와 연관이 높은 IT시스템이 포함되어 평가되어야 함

감사위원회 체크포인트

☑	지배회사가 자회사의 통제 구축 및 평가를 지원·감독할 규정과 정책을 배포하고 있으며, 자회사 평가를 위한 평가조직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가?
☑	경영진은 자회사 재무제표 전체 수준, 특정 프로세스 수준 또는 그룹차원의 모니터링 활동으로 범위 대상을 적절히 선정하고 있는가?
☑	연결 범위 내에 선정된 자회사의 주요 IT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삼정 KPMG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4. 자회사의 미비점 감독(1/2)

자회사에서 발견된 미비점이 단독 또는 결합되어
그룹차원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중요한 취약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발생한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취합하여 연결 실체 차원에서 검토하여 최종 평가를 수행

Case1 자회사의 중요한 취약점 발견

그룹차원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이 낮지 않다면
중요한 취약점

그룹차원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이 낮다면
유의한 또는 단순한 미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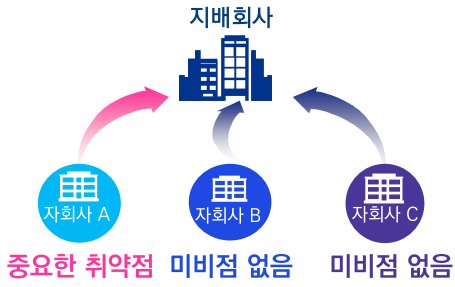

Case 2 다수의 자회사들의 유의적 미비점들이 결합

그룹차원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이 낮지 않다면
중요한 취약점

그룹차원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이 낮다면
유의한 미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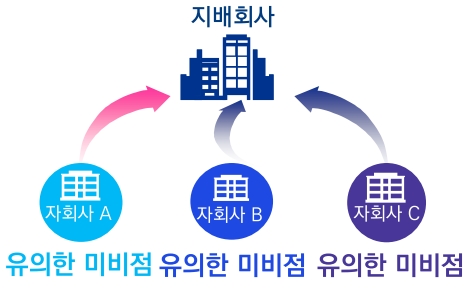

삼정 KPMG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4. 자회사의 미비점 감독(2/2)

-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를 수행하면서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해당 미비점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후속적으로 미비점의 치유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을 확인해야 함
- 미비점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지배회사에게 있으므로,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평가 수행 결과는 지배회사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함

감사위원회 체크포인트

☑	자회사 통제활동의 평가 결과와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이 취합되어, 지배회사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에 적시에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경영진은 특정 자회사에게 미비점이 발생할 경우, 그룹 내 다른 자회사에서도 유사한 미비점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룹차원의 미비점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
☑	자회사에서 미비점(외부감사인 지적사항 포함)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시정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추가적인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치유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삼정 KPMG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